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이원형 의원 발의)

의안 번호	971

발 의 년 월 일 : 2023년 08월 03일
발 의 자 : 이원형 의원(1명)
찬 성 자 : 김영철, 김용일, 김인제, 민병주, 박영한, 박환희, 송도호, 신복자, 왕정순, 윤종복, 이종태, 임종국, 전병주, 최민규, 한 신, 홍국표 의원(16명)

1. 제안이유

○ 최근 기록적인 ‘폭염’의 발생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음. 기후위기로 인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폭염과 열대야가 50%가량 증가함. 기상청의 ‘최근 30년간 기후현황’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2013~2022년 8월) 동안의 폭염 일수는 10년 전의 기간(2003~2012년)보다 49%(3001일), 20년 전의 기간(1993~2002년)보다는 39%(2543일) 증가하여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 서울과 같은 도시의 폭염은 계절적 요인과 더불어 도시열섬 현상으로 인해 피해가 가중되어 발생. 폭염이 극심했던 2018년 기준 이전 5년간(2013년~2017년) 발생한 온열질환자 평균 증가율은 특·광역시(269%)가 도 지역(205%)보다 높았음. 특히 서울이 평균 84명에서 2018년 616명(633% 증가)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에도 폭염에 대비한 별도의 피해 예방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2018년 9월 18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난에 폭염이 추가됨에 따라 폭염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폭염저감시설의 설치와 운영 및 피해 복구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이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시민은 폭염특보가 발령한 경우에 폭염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고, 폭염 피해 예방 시책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정부 폭염대책을 반영하여 매년 서울시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기관 및 법인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지역에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함(안 제7조)

바. 폭염취약계층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함(안 제8조)

사. 폭염저감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명시하고, 자치구에서 설치한 폭염저감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아. 폭염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전문기관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자. 폭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도록 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의 예방·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시장·구청장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3.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4. “폭염저감시설”은 폭염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의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폭염으로 인한 시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안의 자치구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폭염특보가 발령한 경우 시와 자치구에서 제공하는 폭염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의 폭염 피해 예방 시책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대책 수립 등) 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에 따른 정부의 폭염대책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폭염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폭염대책기간 시작 이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 현황 및 전망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쉼터의 현황 및 관리 방안
5. 폭염저감시설 현황 및 관리 방안
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7.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8.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폭염취약지역 홍보활동) 시장은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에 노출되는 실외사업장, 건설현장, 논·밭, 비닐하우스, 길가 및 배달노동 등 폭염취약 현장에서 폭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8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붕녹화, 쿨루프 등 건축물의 녹화시설 설치 사업
2. 선풍기, 에어컨 등 냉방물품 보급·보수 사업
3. 무더위쉼터, 살수시설, 차양막 등 폭염 회피·저감 시설 설치 사업
4. 온열질환의료비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무더위쉼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무더위쉼터의 냉방비 및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폭염저감시설 사업의 지원 등) ①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
2. 폭염대응 관련 기관에서 시행하는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

3. 공동주택 등 민간에서 시행하는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

4. 개인 건축물 등에 시행하는 쿨루프 설치 사업(옥상녹화사업 등과 중복되는 사업은 제외한다.)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에 대하여 유지·관리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폭염 안전교육 실시)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기관에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